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시설
14. 구거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21. 1. 5.>

1. 전기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 · 군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전기통신설비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 ·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자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응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응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2024. 5. 7.>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 ·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6. 국가유산 조사비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응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응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2024. 5. 7., 2025. 3. 25.>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